

투자권유준칙

제정 2009-02-04

개정 2019-10-28

전부개정 2021-09-28

개정 2023-05-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총칭하여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9. 28.>

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09. 28.>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21. 09. 28.>

2. '투자권유'란 특정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개정 2021. 09. 28.>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취약한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이 부족한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개정 2021. 09. 28.>

미성년자,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문맹자 등을 말한다.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28.>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9. 28.>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신설 2021. 09. 28.>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9. 28.>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신설 2021. 09. 28.>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09. 28.>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신설 2021. 09. 28.>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09. 28.>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28.>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9. 28.>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28.>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9. 28.>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에도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 확인서”를 통해 그 의사를 확인하여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 09. 28.]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2호의 “금융소비자 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5. 15.>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⑤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정보를 파악함에 있어 해당 투자자가 제2조제5호에 따른 “취약한 금융소비자”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09. 28.]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년(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09. 28.]

제10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등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 정보를 별표 1의 “적합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등은 별지 제3호의 “금융소비자 적합성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적합성 판단 결과를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⑤ 투자자가 스스로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의 “금융소비자 적합성 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09. 28.]

제11조(투자자 녹취·숙려제도) 임직원등은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투자성향 부적합 투자자, 65세 이상 고령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청약하는 경우, 투자자가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결정할 수 있도록 제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09. 28.]

제12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표 2의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기준”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09. 28.]

제13조(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임직원등은 장애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별표 3의 “장애유형별 고객응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 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05. 15.>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2)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가 법 제174조 또는 법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0.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11.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를 권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09. 28.]

제15조(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09. 28.]

제16조(설명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 "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② 별지 제4호의 "투자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05. 15.>

③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등은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⑦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설명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⑨ 임직원등은 제8조제7항에 따라 파악된 "취약한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원금 손실 가능성
2. 손실가능 범위
3. 중도해지시의 불이익
4.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5. 기한이익 상실 사유
6. 기타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1. 09. 28.]

제6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7조(계약서류의 교부)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시행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09. 28.]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서면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금소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금소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②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예약한 금전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서면등을 발송할때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금융소비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④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전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⑥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⑦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09. 28.]

제19조(위법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 제3항, 제19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제20조 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5.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④ 회사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09. 28.]

제20조(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방법)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금융소비자의 법령 및 계약상 권리 및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를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투자자가 특정하는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② 전항의 정보에 관하여 투자자가 별도로 안내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등은 제16조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시 제17조 내지 제19조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09. 28.]

제21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1. 09. 28.]

제22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5. 15.>

② 회사는 금소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10년(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5. 15.>

③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신설 2023. 05. 15.>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설 2023. 05. 15.>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05. 15.>

[본조신설 2021. 09. 28.]

제23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금융투자상품 판매절차와 관련하여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법규 등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09. 28.]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적합성 판단기준

적합성 판단기준

<p>신탁거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합 (아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신탁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신탁계약 상품이 없는 경우
<p>위험에 대한 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합 (아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희망하는 신탁(예정)기간과 신탁기간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원본 보전 선택 시,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갑종처분신탁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신탁원본 기준 50% 초과 손실 감수 불가 선택시 50%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차입형 토지신탁 또는 갑종 처분신탁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p>금융상품 이해도,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적합 (아래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항목에서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함을 선택하고,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7개 문항에 대한 점수 합계가 10점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에 대하여 이해도가 있으면서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7개 문항에 대한 점수 합계가 0점 미만인 경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투자자'란 65세 이상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2. '초고령투자자'란 80세 이상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3. '조력자'란 초고령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는 65세 미만의 가족, 후견인, 관리직 직원 등을 말한다.
4.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가.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나.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다.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라.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마.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바.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 사.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아.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자.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차.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제2장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제3조(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본사 전담부서)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는 고령투자자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제5조(상품 개발·판매 시 고령투자자 판매 위험분석) 상품개발담당부서는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신상품 개발·판매 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고령투자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초고령투자자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설명서에 반영하거나, 사업부서에 고지하여야 한다.

1. 고령투자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초고령투자자에게 부적절한 상품인지 여부

제6조(녹취제도 및 숙려 제도)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장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제7조(고령투자자 판매절차 교육)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이 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불완전판매 점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고령투자자가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
2. 과도한 신용거래가 수반되거나, 투자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높은 경우
3. 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경우

제9조(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은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를 받아 고령투자자로 하여금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조력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제10조(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 임직원은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4장 초고령투자자에 대한 추가 보호방안

제11조(투자권유 부적합 상품 판매 자제) 임직원은 초고령투자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에 반영하거나, 영업점에 고지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음에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하여야 한다.

제12조(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판매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은 초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기록·유지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초고령투자자에게 통화, 면담 등을 통해 가입한 금융상품 현황 등을 안내하고 그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장애유형별 고객응대 기준

제1조(목적 및 정의) ① 이 매뉴얼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서비스 제공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대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2조(지체 장애인) 지체장애란 사지(팔다리)와 몸통의 운동기관이 있는 중추 신경계 및 뼈, 관절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일상생활에서 자기 혼자 활동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를 말하며 응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손님은 편하지 않도록 과하지 않은 태도로 도와드린다.
2.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대화할 때 편안한 위치를 잡은 후, 상대방과 마주보면서 이야기한다. 서있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과 너무 가까이 위치하지 않으며, 키가 클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장애인의 시야를 확보한다.
3. 대화가 길어지는 경우 좌석에 앉도록 한다. 의자나 앉을만한 곳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제안한다.
4. 장애인의 팔이나 지팡이, 휠체어를 잡아주는것보다 문을 잡아주는 것이 더 좋으며 문을 잡아줄 때는 사람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잡아주고, 문을 닫을 때는 장애인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엘리베이터 이용시에는 장애인이 완전히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을 때는 보장구가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엘리베이터 밖에서 장애인을 도울 때는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지 버튼까지

손이 닿는지 물어보아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신 눌러준다.

6.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인하고 입구나 주차장 계단등과 같은 장벽이 없도록 한다.

제3조(시각 장애인) 시각장애는 감각능력인 시각의 손상으로 한쪽 눈 혹은 양쪽 눈 시력이 모두 없거나 시력 교정 후에도 시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응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각장애인을 처음 만날 때는 또렷하게 소속부서와 이름을 먼저 밝혀, 상대방에게 직원임을 알리고, 물어볼 사항을 사전에 생각하게 한다.

2. 시각장애인의 경우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크므로 사물의 위치를 '여기,저기,이쪽,저쪽'과 같은 표현 대신 '위,아래,우측,좌측' 과 같이 구체적인 표현으로 안내한다.

3. 시각장애인에게는 업무처리 단계별로 구두로 설명하여, 진행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한다.

4.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는 팔을 시각장애인에게 내주며 팔은 팔꿈치 부분이나 위를 잡게 한다. 만일 시각장애인이 팔 잡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서로가 상대방의 보행을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예외적인 어떤 곳에 접근할 때는 우선 멈춰서서 처한 상황을 설명한다.

5. 지팡이는 안내견과 마찬가지로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용구이므로 시각장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팡이를 만지지 않는다.

6. 시각장애인이 계단 쪽을 향하여 가는 경우, 계단의 숫자와 방향을 말해 준다.

7.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는 시각 장애인의 기준에서 의자가 어느 방향에 있는 지를 이야기 해준다.

8. 시각장애인에게 돈을 건네 줄 때는 화폐단위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9. 음료를 권할 때는 뜨거운 지, 차가운 지 알려주고 손을 잡아 직접 대어 준다.

제4조(청각 장애인) 청각장애는 소리를 못 듣거나, 들어도 사람이 분별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려서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말하며 응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에게 이야기 할 때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선을 끌고 말할 때는 눈을

보면서 입 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반복해서 말해준다.

2. 청각장애인에게 이야기 할 때는 의도와 태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하며,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말하지 않는다.

3. 청각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액수나 중요한 사항들은 글로 적어 주고 영수증을 같이 제공한다.

제5조(언어 장애인) 언어장애는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응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을 하기 전에 장애인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입 모양을 읽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앞에 서서 직접 바라보며 명확하게 말한다.

2. 많은 언어장애인들이 언어 장애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의사소통을 하므로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언어장애인의 대화속도는 비장애인 만큼 빠르지 않으며 청각장애가 함께 있는 장애인은 상대방의 대화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더 걸림을 인식하여야 한다.

4. 언어장애인이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듣고 함부로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뇌병변 장애인) 뇌병변장애는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뇌성마비, 외상성 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하며 응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화를 나눌 때는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2. 해당 장애인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3. 갑자기 넘어졌을 경우 어떤 도움이 필요한 지 물어본 후 도움을 준다.

제7조(발달 장애인) 발달장애는 정신적 장애의 하나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지적장애'는 정신적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이고

'자폐성장애'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표현, 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응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익숙하지 않은 많은 시도에 긍정적인 관심, 반갑게 맞이하는 얼굴표정과 제스처, 발달장애 손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깊이 들으려는 적극적인 경청자세가 필요하다.
2. 대화를 할 때 어려운 단어보다는 그 단어의 의미는 살리되, 쉬운 단어와 용법을 사용해서 설명하며, 중문이나 복문보다는 명확한 단문으로 구사하여 쉽게 이해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 잘 안들려서가 아니라 설명하는 단어나 표현,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목소리 톤(ton)을 높여 큰소리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제8조(장애손님응대 유의사항) ① 대화 중에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안되며, '손님'이라 호칭하고 응대한다.

- ② 최대한 밝고 소음이 적은 곳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한다.
- ③ 과잉보호나 과잉친절, 자기만족을 위한 동정이나 자선을 베푸는 듯한 언행은 손님을 불쾌하게 할 수 있으므로 손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거나 사전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 맞춰드린다.
- ④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목발 기타 보장구들은 개인의 사적인 물건으로 함부로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않는다. 특히 사용자가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 놓아서는 안되며, 가방 또는 기타 소지품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한다.
- ⑤ 비 오는 날 등 바닥이 미끄러우면 다치기 쉬우므로 장애인에게 미리 알려준다.
- ⑥ 직원들끼리 힐끗힐끗 쳐다보거나, 속삭이는 것은 장애손님께 오해를 드리거나 불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삼가야 한다.
- ⑦ 항상 먼저 묻고 나서 행동하며, 장애인이 휠체어를 밀어주기 바란다고 지레 짐작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 여부 확인서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등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며, 이에 따라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문, 연락 목적 및 경위 (택 1)	<input type="checkbox"/> 본인에게 적합한 종류의 신탁상품을 권유받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적합성 원칙 적용대상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상품 권유를 원하지 않으며, 아래 신탁계약을 청약함. <input type="checkbox"/> 차입형 토지신탁계약 <input type="checkbox"/> 갑종 처분신탁계약 (수탁자가 처분조건 및 방법 결정)	
2. 전문금융소비자 해당여부	전문금융소비자	<input type="checkbox"/> 주권상장법인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금융지주회사,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일반금융소비자	
3. 일반금융소비자 전환 신청	<input type="checkbox"/> 일반금융소비자로 대우받고자 함 ※ 전문금융소비자 중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 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사항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관계법규 등의 확인을 거쳐 일반금융소비자로의 전환 가능 여부를 판정하고, 필요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경우, 적합성 원칙 등의 적용에 따라 신탁계약 체결 권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p>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p>	<p><input type="checkbox"/> 신탁원본 기준 50%를 초과하는 손실은 감수할 수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신탁원본 기준 5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대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p>
<p>신탁계약에 대한 이해도</p>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신탁 관련 거래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수행 경험 또는 교육 이수 사실이 없어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함</p>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신탁 관련 거래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험, 교육 이수 사실은 없으나, 부동산신탁 구조에 대해 사전적인 조사 및 검토를 통해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신탁 관련 거래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험 또는 교육 이수 사실이 있어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음</p>
<p>재산상황(개인·법인)</p>	<p>[총 자산규모 (순자산)]</p> <p><input type="checkbox"/> 0원 미만 (-5점) <input type="checkbox"/> 10억원 이하 (0점)</p> <p><input type="checkbox"/>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5점) <input type="checkbox"/> 30억원 초과 (+10점)</p> <p>[순자산 대비 신탁대상 부동산 가액]</p> <p><input type="checkbox"/> 30% 이하 (+10점) <input type="checkbox"/> 30% 초과 50% 이하 (+5점)</p> <p><input type="checkbox"/> 50% 초과 80% 이하 (0점) <input type="checkbox"/> 80% 초과 (-5점)</p> <p>[순자산 대비 투자성 상품의 유형별 비중]</p> <p><input type="checkbox"/> 30% 이하 (+10점) <input type="checkbox"/> 30% 초과 50% 이하 (+5점)</p> <p><input type="checkbox"/> 50% 초과 80% 이하 (0점) <input type="checkbox"/> 80% 초과 (-5점)</p>
<p>투자경험</p>	<p>[취득·처분한 경험이 있는 투자성 상품 (모두 선택)]</p> <p><input type="checkbox"/> 주식 (+5점)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선물, 옵션, ELS, ELW 등) (+10점)</p> <p><input type="checkbox"/> 채권 (+3점) <input type="checkbox"/> 주식형펀드 (+5점) <input type="checkbox"/> 채권/혼합형 펀드(+5점)</p> <p><input type="checkbox"/> 외화증권 (+5점) <input type="checkbox"/> 해외펀드 (+5점) <input type="checkbox"/> 금전신탁 (+5점)</p> <p><input type="checkbox"/> 차입형토지신탁 (+10점) <input type="checkbox"/> 갑종처분신탁 (+10점)</p> <p>[위에서 선택한 상품을 취득·처분한 금액 규모]</p> <p><input type="checkbox"/> 500만원 미만 (-5점) <input type="checkbox"/>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0점)</p> <p><input type="checkbox"/>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점) <input type="checkbox"/> 1억원 이상 (+10점)</p> <p>[부동산개발사업 전문성 (모두 선택, 각10점)]</p> <p><input type="checkbox"/> 주택사업자 등록</p>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개발업 등록</p> <p><input type="checkbox"/> 기타 부동산개발 및 건설관련 인허가·등록</p>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개발사업 업무수행 경험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담당인력</p>

	포함) <input type="checkbox"/>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목적 법인인 경우
취약금융소비자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취약금융소비자가 본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 (-10점) <input type="checkbox"/> 법정대리인이 본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0점)
4. 고객확인사항	
<p>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이 상기와 같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p> <p>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본인의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신탁 계약 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p> <p>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인 경우) 금융소비자의 연령 : 만 () 세 </p> <p>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기 목적을 위해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p> <p style="text-align: right;"> 20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금융소비자 성명(상호) : </p> <p> (서명/인) </p>	

금융소비자 적합성 진단 보고서

고객명		투자권유상품	
------------	--	---------------	--

1. 금융소비자 정보 확인서 주요 응답 결과

신탁거래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원본보장형	<input type="checkbox"/> 원본보장형 이외	
신탁상품 이해도	<input type="checkbox"/> 보통 이상	<input type="checkbox"/> 낮음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input type="checkbox"/> 점수합계 0점 미만		
	<input type="checkbox"/> 점수합계 10점 미만		
	<input type="checkbox"/> 점수합계 10점 이상		

2. 적합성 판단 결과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input type="checkbox"/> 신탁 거래 목적 부합 상품 없음
	<input type="checkbox"/> 희망하는 신탁(예정)기간과 실제 필요 기간이 부합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손실 부담 의사 없음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점수합계 10점 미만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위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 점수합계 0점 미만

적합

투자권유사유	<p>(예) 고객의 부동산신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고객의 손실감수능력이 높으므로 차입형토지신탁상품을 권유하였음.</p>
---------------	--

■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금융소비자(이하 “고객”)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회사와 고객 간 체결한 신탁계약이 적용됩니다. 이 설명서는 상담일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상품은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상품으로, 위탁자의 신탁계약의 임의해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품입니다.

※ 신탁계약 체결 전 반드시 이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센터(02-3287-46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상품 개요

신탁계약명	
위탁자	
수익자	
우선수익자	
신탁기간	

2. 투자에 따른 위험

■ 본 상품은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투자성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신탁 후 부동산가치하락(적절한 매수희망자의 부존재, 자금조달의 어려움,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준공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신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3.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비용) [단위 : 원]

	신탁보수	
기타비용 ※ 사업진행과정에 따라	예상 사업수지 분석 자료에 따라 산출된 사업비 (토지비 제외)	

변동될 수 있음	신탁원본 등기이전비용 등 위 사업비 외 위탁자 부담비용	
----------	--------------------------------------	--

4. 계약의 해지·해제 관련 사항

- 위탁자는 수탁자, 수익자(우선수익자 포함)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경제사정의 변화 등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해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수탁자가 지급받아야 할 비용 등과 신탁보수를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5. 신탁계약의 종료

■ 이 신탁계약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합니다

-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로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대금의 정산이 종료 되고 신탁의 계산이 완료된 경우
-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6. 유의사항

■ 신탁수익권의 매매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 또는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한 때에는 회사에게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

